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안 설 명

행정자치위원회 박수빈 의원

존경하는 김원태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북구 제4선거구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박수빈 의원입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난 10.29 이태원 참사 후속 조치와 재발 방지를 위해 ‘다중운집행사’를 1천명 이상으로 예측되는 행사로 정의하고, 주최자·주관자가 있는지 여부, 자체 질서확보요원 또는 안전 관리

요원의 존재 여부, 행사 참가자의 수, 행사 실시 장소의 특성 및 위험요소 등을 고려하여 자치경찰 사무의 구체적 내용의 실시 여부 등을 결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셔서 본 의원이 제안 드린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